

2017년도 기록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 2017년도 기록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0일
행정자치부장관

1. 시험일 : 2017. 5. 20.(토)

2. 시험장소 : 대전문정중학교

○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-11

※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실 출입은 시험 당일만 가능)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시험과목	문제유형	문항수	시험시간	배점
기록관리학개론(법령포함), 전자기록관리론, 행정법총론	4지1택형 객관식	과목당 25문항	10:00 ~ 11:15(75분) (과목당 25분)	과목당 100점

※ 시험실 입실 09:20까지(시험실 개방 08:00)

4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- 나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**신분증을 지참**하여야 합니다.
- 응시표 출력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[<http://www.gosi.go.kr>]→마이페이지→응시표 출력
 - ※ 응시표 출력은 5.10.(수) 09:00부터 가능합니다.
 - 신분증 : **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**
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다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배탈·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,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**재입실이 불가**하므로 시험을 계속 볼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라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**시험시간 중에는** 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 **일체의 통신 기기 및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- ※ 소지하고 있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전 시험실 앞쪽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
- 바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**배부된 모든 문제책과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사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·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시계 등)는 사용 불가합니다.

아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자.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차.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* 제출 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, 2017.5.12.(금)까지,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(042-481-6227, 6233) 담당자와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임신부(의사 소견서 1부),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, 의사진단서 1부)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 ※ 붙임 [필기시험 답안지 견본] 참조

가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나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다. 답안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과목란에 표기하여야 하며, 해당 과목을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본인이 표기한 답안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

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.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
※ 다만,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하나의 답만을 <보기>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● 잘못된 표기 ○ ⊗ ⊖ ⊕ ⊙ ⊚ ⊛

바. 답안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위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 제1항 제1호~6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·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,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▶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▶ 시험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. 5. 29.(월) 발표되며,

사이버국가고시센터[<http://www.gosi.go.kr>], 국가기록원[<http://www.archives.go.kr>],

나라일터[<http://www.gojobs.go.kr>], 대한민국공무원되기[<http://www.injae.go.kr>]

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